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제3차 이사회기록(임시)

1. 회의통지일자 : 등기발송 2022년 4월 4일(월)
2. 회의 일시 : 2022년 4월 13일(수) (11시 00분)
3. 회의 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1319(대저1동)
4. 재적 이사 : 7명
5. 참석 이사(6명) : 대표이사 신 수 상임이사 김 호 이 사 조 제 이 사 이 주
이 사 이 욱 이 사 서 희
6. 불참(1명) : 황 영이사
7. 심의 안건 :
 - 1) 2021학년도 부산혜원학교 회계 결산(안) 심의의 건
 - 2) 2022학년도 부산혜원학교 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3) 2022학년도 부산혜원학교 중등 기간제 교원 하 리 신규 임용의 건
 - 4) 부산혜원학교 이 정교사 휴직기간 연장의 건
 - 5) 법인 및 각 기관별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
 - 6) 한솔대학평생교육센터 신규 운영규정 제정 의결의 건
 - 7) 임원(감사) 선임의 건
 - 8) 정관변경 심의 의결의 건(임원 변경건)

8. 회의내용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2022년도 제3차 임시 이사회 개최함에 있어 성원보고를 요청하다.

상임이사 : 김 호

재적이사 7명중 이사 6명 참석하여 본법인 정관 제2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 개최를 선언하다. 그리고, 전차회의록(2차)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낭독을 요청하다.

상임이사 : 김 호

2022년 3월15일(화)에 개최한 2022년도 제2차 이사회(임시) 회의록을 낭독하다.(회의자료집 P1)

① 2022학년도 부산혜원학교 초등 기간제교원 김 주의 신규 임용 건 ⇒ 원안대로 가결됨.

② 2022학년도 부산혜원학교 중등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심의의 건 ⇒ 원안대로 가결됨.

전차회의록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는지 문의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전차 회의록 내용중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고 동의 및 재청을 요청하다.

이 사 : 이 욱, 이 주

원안대로 접수하기를 동의하다.

이 사 : 서 희, 조 제, 신 수, 김 호

동의를 재청하다.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전차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 승인하기로 하다.

2021년도 학교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감사보고를 김호 상임이사에게 보고를 요청하다.

상임이사 : 김 호

학교 회계 결산 감사 결과를 유인물로 보고하다.

"본인은 지난 2022년3월28일 베데스다 법인내 교장실에서 2021년도 회계 및 업무 감사를 실시한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의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03.01.부터 2022.2.28.로 종결되는 2021학년도 부산혜원학교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문서와 장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결산서의 각항은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감사 김 열, 감사 이 근, 피감사자(입회인)부산혜원학교장 김 숙-

<주요내용을 회의자료집 P2를 활용하여 보고하다.>

이 사 : 조 제,이 옥

감사 진행에 대한 미흡한 사례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였기에 원안대로 접수하기를 동의하다.

이 사 : 이 주, 서 희,신 수,김 호

조 제,이 옥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이 옥,조 제 이사의 동의와 이 주,서 희,신 수,김 호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원

"예" 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감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2022년도 제3차 이사회(임시)에 법인과 산하기관에서 제출한 부의 안건인

1)2021학년도 부산혜원학교 회계 결산(안) 심의의 건

2)2022학년도 부산혜원학교 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3)2022학년도 부산혜원학교 중등 기간제 교원 히 리 신규 임용의 건

4)부산혜원학교 이 정교사 휴직기간 연장의 건

5)법인 및 각 기관별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

6)한솔대학평생교육센터 신규 운영규정 제정 의결의 건

7)임원(감사) 선임의 건

8)정관변경 심의 의결의 건(임원 변경건)

외에 이사님들께서 추가로 제출할 안건이 있는지 문의하다.

이 사 : 조 제

부의 안건외에 안건이 없어 원안대로 접수하기를 동의하다.

이 사 : 이 옥, 서 희, 이 주,신 수,김 호

조 제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조 제 이사의 동의와 이 옥,서 희,이 주,신 수,김 호 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원

"예" 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부의 안건외에 안건이 없어 원안대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2022년도 제3차 이사회에 제출한 부의 안건중 첫 번째,
2021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상임이사 : 김 호

먼저, 2021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안) 심의의 건으로 2021학년도 세입 결산액 6,119,584,951원,
세출 결산액은 6,102,796,280원, 잔액(이월금) 16,788,671원임을 유인물(p5~p7)로 설명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1호 안건인 2021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안에 대해 이의 있는지 문의하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1호 안건인
학교 회계 결산은 앞서 보고처럼 회계감사를 마친 후 이사회에 올리게 되었고, 주요사항으로는 교육청
보조금 60여억원의 강서구청의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보조금 3천 9백만등으로 구성되었고 결산금액은 매년
대동소이함을 설명하다.

이 사 : 조 제

1호 안건인 2021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다.

이 사 : 이 욱, 서 회, 이 주, 신 수, 김 호

조 제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조 제 이사의 동의와 이 욱, 서 회, 이 주, 신 수, 김 호 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 원

"예" 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1호 안건 2021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안은 세입결산액이 6,119,584,951원, 세출결산액이 6,102,796,280원,
이월금이 16,788,671원으로 확정, 가결됨을 선포하다.
다음은 2호 안건인 2022학년도 학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다.

상임이사 : 김 호

2022학년도 학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세출 각 9,610,309,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액에서
206,090,000원 증액됨을 유인물(p9~p10) 참조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2호 안건인 2022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이나 이의 있는지 문의하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난 2월 2차 이사회에서 본 예산 심의 승인 후 입금된 강서구청 보조금 39,000,000원
과 교육청 목적사업비보조금 추가지원비 176,717,000원, 자산매각, 판매수입등 2,200,000원은 증액 편성,
전년도이월금 11,827,000원 감액 편성됨을 설명함.

이 사 : 조 제

2022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다.

이 사 : 이 욱, 서 회, 이 주, 신 수, 김 호

조 제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조 제 이사의 동의와 이 욱, 서 회, 이 주, 신 수, 김 호 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 원

"예" 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참석이사 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하였으므로, 제2호 의안인 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학교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은 세입·세출 각각 9,610,309,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 가결됨을

선포하다.

다음으로 2022학년도 부산혜원학교 중등 기간제교원 하 리 신규 임용의 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상임이사 : 김 호

3호의안인 2022학년도 부산혜원학교 중등 기간제교원 하 리 신규 임용의 건은 2022학년도 중등 기간제 교원 신규 채용 전형결과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임용적격여부 검토를 위한 각종 조회결과를 근거로 최종합격자 하 리의 신규임용을 학교장이 제청함에 따라 하나리를 2022년5월01일부터 2023년2월28일까지 임용하기로 사립학교법제53조의2, 2016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 편람, 배제2022-31(2022.3.7.), 배제 2022-34(2022.3.21.), 부산혜원학교-2664(2022.4.7.), 본법인 정관 제4장제26조(의결사항)와 관련하여 제안 설명하다.

<주요내용을 회의자료집(P11~P12) 및 제안설명서 2022학년도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및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활용하여 발표하다.>

소속	구분	성명	생년월일	담당 과목	최종학력	자격증				임용 기간	임명제한 여부	
						자격종별	표시 과목	발급 연월일	자격증 번 호			
부산혜원 학교	중등 기간제	하 리		특수 국어	인 교 원	특수 중등2급	특수 국어	20	20	인 제31 호	2022.5.1.~ 2023.2.28.	해당없음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간제교사를 자진 사퇴한 김·혁선생의 후임으로 1차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고 재공고 후 1명이 지원하여 면담 및 각종 규정에 맞도록 전형을 실시하였음을 설명하다.

제3호 의안인 2022학년도 부산혜원학교 중등 기간제교원 하 리 신규 임용의 건에 대해 이의 있는지 문의하다.

이 사 : 이 욱

2022학년도 부산혜원학교 중등 기간제교원 하 리 신규 임용의 건은 원안대로 2022년5월1일부터 2023년2월28일까지 임용하기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 사 : 조 제, 서 회, 이 주, 신 수, 김 호

이 욱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이 욱 이사의 동의와 조 제, 서 회, 이 주, 신 수, 김 호 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 원

“예”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참석이사 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하였으므로, 제3호 의안인 2022학년도 부산혜원학교 중등 기간제교원 하 리 신규 임용의 건은 원안대로 2022년5월1일부터 2023년2월28일까지 임용하기로 만장 일치 의결됨을 선포하다.

다음으로 4호 안건인 부산혜원학교 이 정교사 휴직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상임이사 : 김 !호

부산혜원학교 이 정교사의 휴직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휴직연장기간을 심의하여 본법인 정관 제72조 및 교육 공무원법 제44조제1항의 휴직기간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설명함.<주요내용을 회의자료집(P13~P14)을 활용하여 발표하다.>

소속	직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유	최초 휴직기간	휴직연장 신청기간	비고 (담당과목)
부산혜원학교	교사	이 정	남		질병 휴직	2022.3.1.~ 2022.4.30. (2월0일)	2022.5.1.~ 2022.7.5. (2월5일)	체육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4호 안건의 이 정선생의 휴직기간 연장 신청의 건은 지난 이사회에서도 한번 언급해 드렸듯이 이 정선생의

이 사 : 조 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 사 : 이 욱, 이 주, 서 회, 신 수, 김 호
조 제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조 제 이사의 동의와 이 욱, 이 주, 서 회, 신 수, 김 호 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 원
"예" 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참석이사 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하였으므로, 제4호 의안인 부산혜원학교 이 정교사 휴직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됨을 선포하다.

다음으로 제5호의안인 2022년도 법인사무국 및 각 기관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베데스다 법인사무국과 베데스다원, 은송의집, 직업재활원위,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관별 사업 변경에 대한 주요내용을 [회의자료집 P15~P25] 및 제안설명서를 활용하여 발표하다.>

상임이사 : 김 호
먼저, 2021년도 법인사무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회의자료P.11~P13]와 같이 2021년도 본예산보다 세입·세출이 22,574,000원이 감액된 370,826,000원으로 작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반적인 사업이 중단되어 이월금이 증액된 부분임을 보고드리며 세부내용을 제안서에 의거 설명하다.

이어서 베데스다원 세입·세출 1차 추가 경정예산안을 [회의자료 P18,P22]와 같이 2022년도 본예산보다 세입·세출이 168,757,000원이 증액된 2,560,471,000원입니다. 작년 기능보강신청으로 식당 및 주변 배수로 관련 개보수공사 140,630,000원 계획되어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프로그램 취소로 이월금이 증액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조율되면서 전면 폐지가 예상됨에 따라 프로그램진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내용을 제안서에 의거 설명하다.

다음으로 은송의집 세입·세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회의자료P19,P23]와 같이 2022년도 본예산보다 세입·세출이 360,479,000원이 증액된 2,685,479,000원으로 베데스다원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프로그램 취소로 이월금이 증액된 부분임을 보고 드리고 세부내용을 제안서에 의거 설명하다.

다음으로 직업재활원 세입·세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회의자료P20,P24]와 같이 2022년도 본예산보다 세입·세출이 248,048,000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내용은 전년도 대비 금년도 깎마늘사업 매출이 200,000,000원 증액 예상되어 983,780,000원으로 세부내용을 제안서에 의거 설명하다.

다음으로 한솔대학 평생교육센터 세입·세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회의자료P21,P25]와 같이 2022년도 본예산보다 세입·세출이 5,400,000원이 감액되어 549,700,000원으로 세부내용을 제안서에 의거 설명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전반적으로 각 기관은 코로나상황에서 행사등을 치루지 못하여 예산의 이월이나 감액등이 발생되었음을 설명하다.

이 사 : 조 제
몇 년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충분한 사전 계획이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 또는 폐지가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수 있기에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회의자료를 받아 검토하였기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2년도 법인사무국 및 각 기관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 계획 변경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 사 : 이 욱,이 주,서 회,신 수,김 호
조 제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조 제 이사의 동의와 이 욱,이 주,서 회,신 수,김 호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 원
“예” 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참석이사 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하였으므로, 제5호 의안인 법인 및 각 기관별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이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됨을 선포하다.

다음으로 제6호의안인 한솔대학평생교육센터 신규 운영규정 제정 의결의 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상임이사 : 김 호
한솔대학 평생교육센터 신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지난 2022.3.25.개최하여 보고드린후 본 법인 정관 제4장(이사회) 제26조(의결사항)2항,8항에 의거 의결 주문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제안서에 의거 설명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한솔대학평생교육센터가 시작된 후 학부모등이 참석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규정을 만들기 위한 수차례의 협의가 있었고, 기존 평생교육센터의 운영규정을 참고하며 전원의 동의하에 만들어 졌음을 설명하다.

이 사 : 조 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솔대학평생교육센터 신규 운영규정 제정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 사 : 서 회,이 욱,이 주,신 수,김 호
조 제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이 욱 이사의 동의와 서 회,이 욱,이 주,신 수,김 호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 원
“예” 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참석이사 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하였으므로, 제6호 의안인 한솔대학평생교육센터 신규 운영 규정 제정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의 건이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됨을 선포하다.

다음으로 제7호 의안인 임원(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임원(감사) 선임에 대한 주요 내용을 회의자료집 및 제안설명서를 활용하여 발표하다.>

상임이사 : 김 호
회의자료집(P29)을 참고하여 보시고, 김병열 감사 임기가 2022.6.30. 만료 예정되어 있어 부산 강서구청 주민복지과-23390(2022.4.6.)호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사인을 추천받았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임원)7에 의해 감사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아래의 추천인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여러 이사님들께서 의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법인에서 결격사유조회 회보(2022.3.31.), 성범죄및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회신, 범죄경력조회 회신(2022.4.12.) 한 결과 “해당없음” 으로 통보받았음을 보고하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직책	소속(현직장)	비고
1	김 열	1	감사	김 열 세무회계사무소 (대전공인회계사 감사반 제31 호)	*부산광역시 동구청 결산검사위원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법규에 따른 임원선임과 변경의 건임을 설명하고, 다른 의견없으시면 제7호 의안인 임원(감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동의 및 재청을 받도록 요청하다.

이 사 : 조 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다.

이 사 : 이 :옥,이 주,서 회,신 수,김 호
조 제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조 제이사의 동의와 이 :옥,이 주,서 회,신 수,김 호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 원
“예” 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참석이사 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하였고, 제7호 의안인 임원(감사)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됨을 선포하다.

다음으로 제8호 의안인 정관변경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감사선임의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회의자료집 및 제안설명서를 활용하여 발표하다.>

상임이사 : 김 호
회의자료집(P31)을 참고하여 본법인 정관 제2장제6조1, 제3장제16조, 제18조2, 제26조4에 의거 임원변경에 대하여 설명하다.

이 사 : 조 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다.

이 사 : 이 :옥,이 주,서 회,신 수,김 호
조 제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조 제이사의 동의와 이 :옥,이 주,서 회,신 수,김 호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 원
“예” 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참석이사 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하였으므로, 제8호 의안인 정관변경 심의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됨을 선포하다. 기타 토의 사항이 있는지 문의하다.

이 사 : 이 :옥
다른 토의 사항이 없으면 마치고를 요청하다.

이 사 : 조 제
이 :옥 이사의 동의하다.

이 사 : 이 주,이 :옥,서 회,신 수,김 호
조 제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조 제이사의 동의와 이 주,이 :옥,서 회,신 수,김 호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 원
“예” 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기타 토의사항이나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폐회 선언하다.

2022년 4월 13일 (수) 11:25 폐회하다.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이사회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상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본법인 정관 제30조2항에 의거 대표이사 및 참석한 이사·감사가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하다.

🌐 사회복지법인 베 데 스 다 이 사 회

참	석	자	대표이사	신	수			신	수	상	임	이	사	김	호	경	훈		
				이	사	이	주			이	주	이	사	이	욱	중			
				이	사	조	제			조	제	이	사	서	희	희			








본법인 이사회의록 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작성 및공개등) 및 사회복지사업시행령 제10조3항(회의록공개기간)에 의거 본법인홈페이지(www.btsd.co.kr), 부산광역시구청 복지행정 법인회의록공개(<http://www.bsgangseo.go.kr>)에 공개되며 이름은 비공개로 게시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 제4호부터 제7호에 따라 본법인 이사회의록이 비공개로 게시될수 도 있습니다.